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23
----------	------

제출연월일: 2019. 2. 1.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5조)
- 나.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추가(안 제5조의2)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5조제1항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
- 다.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추가(안 제5조의3)
 - 1) 원인 제공자는 구청장이 추가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음
 - 2)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 청구 가능
- 라.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3. 근거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변경 표준안(행정안전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2018. 11. 5. ~ 11. 26.(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915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5조제2항 중 “영 제4조제2항”을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으로, “고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로,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 구청장이”로, “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를 “지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각각 “피해주민이”로, 같은 항 중 “재난피해자의”를 “피해주민의”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재난피해자의”를 “피해주민의”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확인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인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응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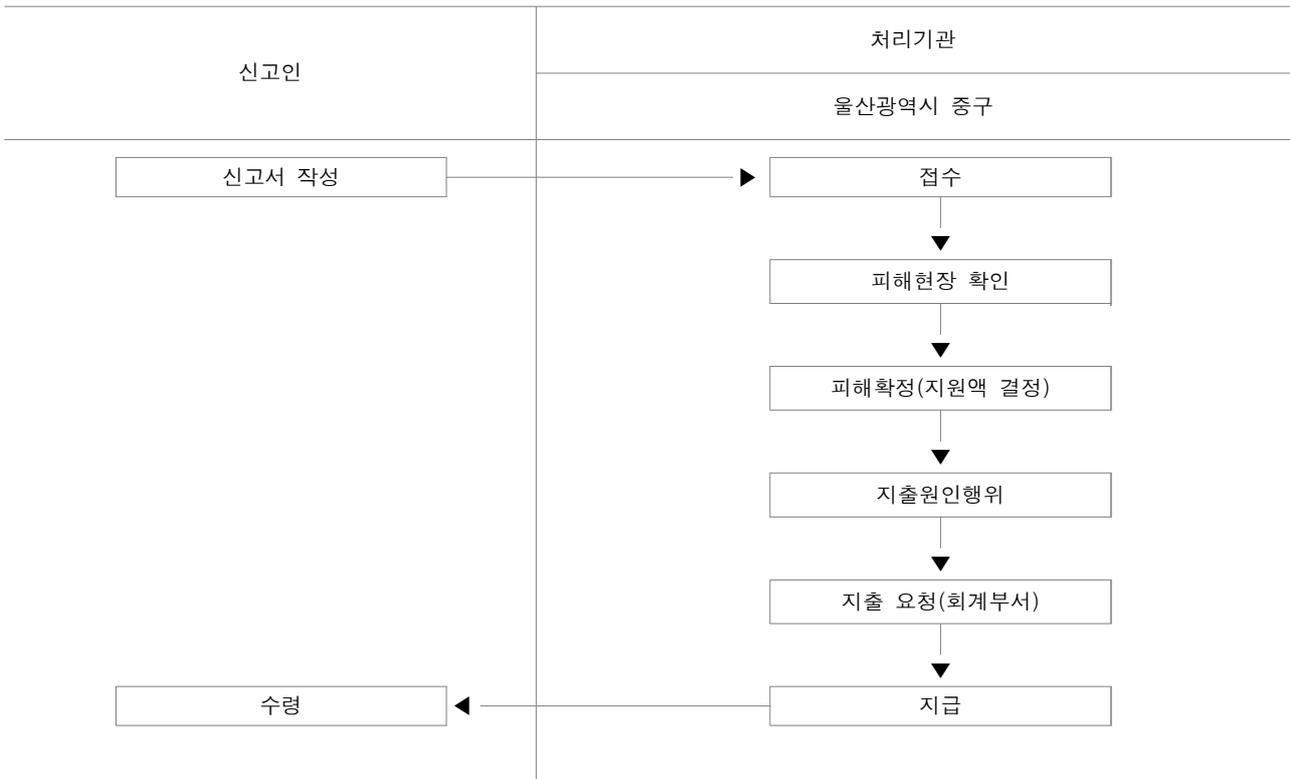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현행	개정안
<p><u>피해자</u>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생략)</p> <p>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재난피해자</u>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신설></p> <p>4.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u>고시</u>한 생활안정지원 및 <u>피해수습지원</u> 부담액의 산정기준, <u>피해상황, 재정여건</u> 등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u>확정</u>한다.</p> <p><신설></p>	<p><u>주민</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기준) ① -----</p> <p>-----</p> <p>----- <u>피해주민</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p> <p>----- <u>피해상황, 재정여건, 영 제4조제2항</u>----- <u>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u>----- <u>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u>으로 한다</p> <p>③ <u>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u></p> <p>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랍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u></p> <p><u>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u></p> <p><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p> <p><u>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u></p> <p><u>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p>
<p>제6조(중복지원 금지) <u>재난피해자</u>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p>	<p>제6조(중복지원 금지) <u>피해주민</u>-----</p>

현행	개정안
<p>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u>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u>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p> <p>① <u>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u> (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u>재난피해자</u>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p> <p>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u>재난피해자</u>는 제4조제1항에 따라 <u>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u>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재난피해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 <u>원인제공자</u>-----</p> <p>-----.</p> <p>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p> <p>① <u>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u>----- ----- <u>피해주민</u>-----</p> <p>-----.</p> <p>② ----- <u>피해주민은 구청장이</u> ----- -- <u>지원을</u> -----</p> <p>-----.</p> <p>③ ----- <u>피해주민이</u> -----</p> <p>-----.</p>

현행	개정안
<p>1. 2. (생략)</p> <p>④ (생략)</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u>재난피해자가</u>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u>재난 피해자의</u>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 통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제9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7조 제6항에 따라 <u>재난피해자</u>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u>재난피해자</u>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u>재난피해자의</u>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피해주민이</u> ----- ----- ----- <u>피해</u> <u>주민의</u> ----- -----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급방법) ----- ----- <u>피해주민</u>----- ----- ----- <u>피해주민</u> ----- ----- ----- ----- ----- -----, ----- ----- <u>피해주</u> <u>민의</u> ----- -----.</p>

근거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

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울산중구054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고용현	전화번호 052-290-405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10월 3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개정의 주요내용은 1.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5조), 2.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추가(안 제5조의2), 3.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추가(안 제5조의3), 4.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내용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11월 03일 울산광역시중구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류지숙/052-290-4903) 안전총괄과장 귀하			